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94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조지연·김소희·김형동

박덕흠 • 김재섭 • 최수진

강대식 • 박정하 • 권영진

임이자 • 고동진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 자(제조자·수입자·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 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 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제품 취급자 등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와 적절한 설비 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사업자(제조자·수입자 ·판매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차등화(안 제10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한 제조자·수입자에는 확대된 유 효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제조자·수입자가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 역할 규정(안 제46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정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감시 결과 확인된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선명령 신설(안 제10조제9항, 제11조, 제34조제3항, 제57조 및 제58조)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 않을 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 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 한 책임을 진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안전기준 검토"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 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등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
	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
	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
	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
	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u>한다.</u>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 등) ① (생 략)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	②
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안전확인대상</u>

③ ~ ⑧ (생 략) <신 설>

⑨ (생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 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에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 ⑧ (현행과 같음)
- ⑨ 환경부장관은 표시기준을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수 있다.

① (현행 제9항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생략)

② (생 략)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 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 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 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 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 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 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인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수 있다.

- 1. · 2. (생략)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u>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u> 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레46 <i>조</i>	스(생활화학기	세품	및	살생	물
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1	
1	이 /뒤레기	7)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

4.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14. (생 략) ②·③ (생 략) 한 검토

- 4. ~ 7. (현행과 같음)
-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 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 9.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83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5의 6. · 7. (생 략) 6. ·

제58조(벌칙)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7. (현행과 같음)